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조용훈 의원 외 4명

제출연월일

2023. 3. 14.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2호
----------	------

발의연월일 : 2023. 3. 14.

대표발의자 : 조용훈

공동발의자 : 이상구, 민병춘
이태모, 윤금숙

1. 제안이유

결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결혼에 따른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통한 결혼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결혼 장려(청년결혼축하금 등)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안 제19조의2)

나.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진근거 신설(안 제19조의3, 제19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8조

「청년기본법」 제4조·제20조·제21조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제2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조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

나.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 : 2023. 3. 14. ~ 3. 18.(5일간)

□ 개정조례안

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년결혼축하금”이란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시장은 청년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만남 장려 사업
2. 결혼장려를 위한 교육사업
3.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기관·단체 등

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의3의 제목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 을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혼인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결혼축하금의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미만
2.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3.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단, 3호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1년 이내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최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최초 신청은 혼인신고

후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청년결혼축하금 지원금액은 700만원 이내로 하여 3회로 분할 지급한다.

1. 1차 : 혼인 신고 후 6개월 경과 시 200만원

2. 2차 :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00만원

3. 3차 :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단, 부부 모두 계속해서 최초 신청일 이후 3년동안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④ 청년결혼축하금은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한다.

⑤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별지 제1호의 청년결혼축하금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청년결혼축하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청년기본소득 지급절차” 를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중지 및 환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하며, 제3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청년결혼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잔여 차수 지원금 지급 조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관외 전출 후 재전입도 전출한 것으로 처리)
2.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 종료 시
3. 기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결혼축하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시

제19조의5제1항 중 “청년기본소득”을 “청년결혼축하금”으로,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19조의2”를 “19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결혼축하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사람부터 소급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및 별표4의 기획감사실 일련번호 1 란을 삭제하고, 인구청년교육과 일련번호 2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구청년 교육과	2	청년결혼축하금 신청 접수 및 송부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9조의3
-------------	---	--------------------	-------------------------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조용훈 의원 외 4명

유의사항

1. 청년결혼축하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부부에 한해 지급됩니다.
2. 청년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미만일 경우에 지급되며, 700만원 이내로 3회 분할 지급됩니다.
4.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청년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5. 과오지급 된 경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됩니다.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의 적합한 지원대상자 선정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수집에 대한 동의】

항 목	개인정보 이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주민등록초본 등) 연락처, 계좌번호 등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진시 적합한 지급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기관	항 목	개인정보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수행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연락처, 계좌번호 등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진시 적합한 지급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청년결혼축하금 지급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ex.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개인정보 이용·수집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의 적합한 지원대상자 선정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유의사항, 개인정보 이용·수집에 관한 동의사항에 대해 확인했으며,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신설></p>	<p>제3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청년결혼축하금</u>”이란 <u>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u></p>
<p>제19조의2(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지속적이고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u>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26세 및 만32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u></p> <p>1. <u>논산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u></p> <p>2. <u>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논산시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u></p> <p>③ 제2항의 요건 충족 시 대상</p>	<p>제19조의2(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① 시장은 청년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p>1. <u>미혼남녀 만남 장려 사업</u></p> <p>2. <u>결혼장려를 위한 교육사업</u></p> <p>3. <u>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u></p> <p>4. <u>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기관·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p>

자에게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반기별로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최초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이후 다음 반기에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기마다 지급대상자의 사망·전출·말소 여부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삭 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삭 제>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

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제19조의3(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의3(청년결혼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혼인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결혼축하금의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미만
2.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3.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하여 6

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단, 3호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1년 이내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최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최초 신청은 혼인신고 후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초본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청년결혼축하금 지원금액은 700만원 이내로 하여 3회로 분할 지급한다.

가. 1차 : 혼인 신고 후 6개월 경과 시 200만원

나. 2차 :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00만원

다. 3차 :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신 설>

<신 설>

<신 설>

제19조의4(청년기본소득 지급절차)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라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시장에게 신청서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단, 부부 모두 계속해서 최초 신청일 이후 3년동안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④ 청년결혼축하금은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 부부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

⑤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결혼축하금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청년결혼축하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의4(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청년결혼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잔여 차수 지원금 지급 조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논산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
지 않는 경우(관외 전출 후 재
전입도 전출한 것으로 처리)
2.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 종료 시
3. 기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결혼축하금을 청
구한 사실이 확인될 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한다.

제19조의5(부서 간 협조) ①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 소관 부서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지급요
건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자료
의 제공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1조(예산의 지원 등) ① (생략)

<삭 제>

제19조의5(부서 간 협조) ① 청년
결혼축하금 -----
--- 제19조의3-----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예산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p>② 시장은 청년들에게 제19조, <u>19조의2</u>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 설 2021.12.31.></p> <p>③ (생략)</p>	<p>② ----- ----- <u>19조의3</u>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혹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

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 및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3. 지방소멸대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투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 인구정책 비전, 목표, 전략 제시 및 추진과제 도출

2.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3. 그 밖의 투자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